



# 두엄누리회보 제 50호

2007년 8월 30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http://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 축분퇴비도 함께 북한에 보내야 / 김상원 회장

한겨레신문 기고문

지난 3월 27일 전남 여수 낙포 부두에서 처음 시작된 대북 비료지원 30만t 수송이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2006년부터 축산협회(대한양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및 대북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북 비료지원 때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축분퇴비)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북한 땅 살리기 및 식량 증산 효과, 남한의 축산발전 기여 및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통일부, 농림부,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함께 공급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북한 사정과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화학비료만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북 비료지원이 이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에 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차 후에 있을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화학비료와 축분 퇴비를 병행해서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2006년 12월 통일농수산 정책연구원에서 농림부에 제출한 '남북 농업협력 체제 하의 북한의 비료부족 해결을 위한 남한 가축분의 자원화 방안과 북한에서의 활용 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속효성 화학비료는 토양 유기

### 오랫동안 산성화된 북한 토양에 화학비료만 쓰면 환경오염 가중

### 남쪽은 처리 못해 해양투기 하는 축분 북에 보내면 일석이조 효과

물 함량을 높이는 지력증진의 노력 없이 계속 공급할 경우, 작물에 흡수되기 전에 토양유실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며 "북한에 퇴비와 화학비료가 함께 적정 공급된다면 현재 생산성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 발표한 적이 있다.

북한은 식량난 가중과 함께, 심각한 비료 부족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정부에 비료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비료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토질개선 및 비료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 북한의 토양은 퇴비의 절대 부족으로 십 수년 이상 토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왔다. 화학비료를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기물도 토양에 남아 있지 않아, 유기질 비료 공급 없는 화학비료 지원은 하천 및 바다의 환경오염만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은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유기질 비료와 증산을 위



한 화학비료의 지원이 병행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시급하게 대북 비료지원의 우선순위를 유기질 비료에 두어 땅심을 살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반면, 남한은 축산업의 발달로 대량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연간 260여만t(570억 소) 해양에 투기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도 생산 가동률이 70%를 밑돌 정도로 재고량이 쌓여 있다. 가축분의 해양투기는 심각한 해

양오염을 야기해 서해와 동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해양 투기되는 가축 분뇨 유기질비료 생산에 활용해, 이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북한 농업회생을 한걸음 앞당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앞에 점점 어려워지는 남한의 축산농가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런던협약 등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 투기를 전면 중지한다는 목표 아래 그 처리방법에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비료(축분퇴비)의 대북 지원은 통일 후 한반도 농업환경은 물론 당면한 북한의 지력 상승과 남쪽의 과잉축분을 해결하는 상생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개시

### 1차 1/4분기 신청 201건 중 17개 품목만 선정

#### 효과 시험 성적서 없이 2차 때 제출한 퇴비는 서류 보완조치 받을 것이 뻔 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이 2007. 3. 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1호로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1/4분기에 신청한 품목 중 17개 품목만 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었다. 이는 신청건수 201건의 8.5%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로 163건은 미비한 서류와 시험성적서 등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21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

다. 또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심의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심의회 기준이 제때 정해지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참여기회를 잃고 말았다. 토양개량제 및 작물생육용 자재에 해당되는 퇴비의 경우는 1차 1/4분기 신청 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가 2차 2/4분기에 몇몇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모두가 서류 미비로 보완조치를 받을 입장에 처해있다. 이는 구비 서류 중 효과시험 성적서 때문인데 효과시험성적서는 작물 재배시험을 마친 후

만들 수 있는 자료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도 적을뿐더러 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 돼야만 하는 것이다. 비료관리법에서 이미 토양에 화학적 변화를 주

**비료관리법에서, 흙에 화학적 변화를 주거나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인정받은 퇴비가 친환경육성법에서 토양개량제의 작물생육용지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효과시험 따로 해야 하나?**

거나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물질을 관련법에 따라 지칭하는 명칭이 바뀌었다고 새로이 시험성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수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로 인해 진흥청에서도 간단한 방

고 있으나 이 또한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효과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의 제품은 이번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효과시험 성적서든지 그를 대신할 어떤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간단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최소 3개월씩이나 소요되는 효과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이번 3/4분기 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될까 염려된다.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법으로 대체할 기준을 마련하

지난 8월3일자로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 확대 등을 주요개정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8591호)이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정부의 비료공급업무 대행기관에 시·도를 추가

대체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하

◦ 농약성분 등 비료원료로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비료와 생산업 등록 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한 비료의 유통, 판매 등 금지

◦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에 관한 권한 이양 등이다.

특히 금번 법률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 시·군·구로 이양되니 업무에 착오 없길 바란다.

이 법의 공포일은 2007년 8월 3일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 2007년도 제2 차 이사회 개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 등 일부 정관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결성기로 결정**

지난 8월7일 협회사무실에서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경남지회장을 제외한 감사2인과 전국 각도 지회장 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1. 2007년도 상반기 업무보

고 및 예산집행 보고

2. 임원선출에 관한 건

3. 명예지도원 지도 단속에 관한 건

4. 축분퇴비 대북지원사업에 관한 건

5. 기타사항 등.

▲ 상반기 업무 보고 및 예산 집행현황 보고 후에 논의된 임원 선출에 관한 건은 협회 회장을 비롯한 이사(각 도지회장) 및 감사 전원이 새로 선출되게 되어 있어 원활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기 위해 현재 1회연임으로 제한한 정관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선거관련 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정관개정 소위원회는 현 이사회가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진흥청에 제출한 민간인 명예지도원 위촉에 관한 건은 각 도 1인씩 선정하기로 하고 도 지회장이 임무를 맡기로



하였다(전라남도농업 김중수 사장) 지도 단속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의를 거쳐 통지하기로 하였다. ▲ 대북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남한에서는 아무리 보내려 하여도 북한 측이 거부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입장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요구하는 화학비료 양에서 우리

가 보내려고 하는 퇴비 양만큼 화학비료가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통일 후 한반도 농업환경을 생각하여 인도적 차원의 화학비료지원과는 별도의 라인을 구축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정지권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것들은 협회는 물론 우리 업계를 대신하여 거래사랑이 전망에 나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 업계는 퇴비비료의 대북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 협회는 물론 다른 단체와도 합심하여 업계의 단합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 축분퇴비 품평회 추진계획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반대로 단체 추천 없이 업체가 직접 신청해야 참여 할 수 있어**

농립부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분퇴비 품평회는 관련 3개 단체 중 (부산물비료협회,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농협공동비장 협의회) 회원 수가 제일 많은 유기비료협동조합이 개최 반대를 주장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애초 계획은 3개 단체가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를 추천 하고 최종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사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유기조합

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되게 되었다. 대신 농협중앙회 축산사이버 컨설팅부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를 통해 농협납품업체 중 참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날자는 2007.10.25 예정이고 장소는 안성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으로 예정 되어있다. 정부의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이 발표되고 부터 스테리 분뇨의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액비위주의 홍보로 인해 축분액비 뿐만 아니라 축분퇴비 까지도 사용농가의 인식이 나빠져 축분으로 만든 비료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만든 축분퇴비가 고가로 수입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퇴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때이다.

### 시상 및 특전

#### ○ 표창 및 특전

구분	상장	총상금
금상(1점)	농립부장관상	3백만 원
은상(2점)	농촌진흥청장상	3백만 원
동상(3점)	농협중앙회장상	1백5십만 원

#### ○ 특전

- 농협중앙회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우수업체에 한해 인증마크 부여
- 포장대에 『농립부 지정 우수 생산업체』 문구 표시 및 인증마크 부착
-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가축분 퇴비 전시회 부스 등 설치 지원
- 우수퇴비업체 언론에 홍보

## 3/4분기 성적서 제출

9월은 3/4분기 출하 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한 업체도 빠짐없이 기간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